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제주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이용자에게 은행의 영업점에서 은행 직원과 직접 대면하여 거래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와 관련된 은행과 서비스 이용자 간 권리 및 의무,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은행이 영업점에서 “이용자”의 요청을 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조회, 이체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의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출금계좌”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결하는 계좌로서 자금 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말합니다.
4. “신청계좌”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결하는 계좌로서 오픈뱅킹공동업무 등록이 가능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말합니다.
5. “추심이체”란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신청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은행 또는 타금융회사의 계좌(계정포함)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운영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운영·제공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합니다.
7.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와 별도 제휴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합니다.

가. “출금이체”란 은행의 출금에 동의한 이용자의 신청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은행의 수납계정 또는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나. “잔액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의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다. “거래내역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8. “오픈뱅킹 관련 차단 서비스”란 오픈뱅킹을 이용한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오픈뱅킹 거래를 이용하지 않을 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해 고객이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대한 오픈뱅킹을 사전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등 오픈뱅킹 업무 관련 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고지 및 변경)

① 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자기기 등의 매체를 통해 제공합니다.

② 은행은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 은행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용자의 이메일,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③ 은행은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은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의 규정을 위해 개별약관을 사용하거나 이용정책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개별 약관 및 이용정책이 우선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기타 개별 거래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면 은행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가입신청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실명확인증표 제시를 거부하거나 실명확인증표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가입신청자의 본인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
 2. 가입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3. 가입신청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4. 가입신청자가 은행에 수시입출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은행이 수시입출금계좌의 개설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5. 가입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6. 본 약관 제7조 제3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본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7. 중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등 가입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입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은행은 가입신청자의 이용신청이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추심이체 동의 및 철회)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심이체의 출금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은행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는 은행에 대하여 전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에 연결된 계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본조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은 관련 규정, 운영기관 이용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계약 해지 신청에 따른 해지 이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이용신청을 한 경우
 -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 다른 이용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은행 및 이용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④ 은행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사전에 통지하며, 이용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① 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SMS, LMS,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② 은행은 전체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통지 내용이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개별통지 합니다.

【제3장 오픈뱅킹서비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 ① 제5조에 따라 은행이 가입신청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가입신청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이용자가 되며, 이때부터 은행은 이용자에게 본 약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은행은 본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추가적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의 오픈뱅킹 관련 차단 서비스 신청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 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적용하여 제공할 서비스를 정할 수 있습니다.
- ⑤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은행 영업점의 영업시간 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조회서비스: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 2. 출금이체서비스

제11조 (이체대상 및 이용한도)

- ① 출금이체 서비스의 이체대상은 현금으로 합니다.
- ② 출금이체 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운영기관의 이용한도를 따릅니다.
- ③ 출금이체에 의한 출금은 은행이 출금요청을 접수한 금융회사의 예금잔액(한도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은행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 ④ 은행은 이용자의 출금계좌 인출가능 예금잔액이 출금하려는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운영기관의 서비스 점검
 - 2. 개별서비스 점검, 변경 등 개별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 3.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 시스템 관리업무
 -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 기타 천재지변, 폭동, 전쟁, 테러,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6. 운영기관의 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및 시행세칙의 개정 등 금융결제원의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와 같이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제한)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압류 등 법적 지급제한이나 법령 위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2. 은행 및 센터에 사고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5. 전자금융사고 또는 사기 등에 의한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합니다. 다만, 제1항 제5호와 같이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수수료】

제14조 (수수료)

- ① 은행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 ③ 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제3조를 준용합니다.
- ④ 이용자는 제3항의 수수료 변경 통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수료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합니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 제4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제5장 의무 및 제한사항】

제15조 (준수사항)

- ① 은행은 서비스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약관, 세부이용지침, 서비스 이용안내 및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 2. 기타 거래절차상 이용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제16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은행 또는 이용자가 제15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 또는 이용자는 제1항의 손해발생이 천재지변, 정전, 통신·회사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합니다.

【제6장 보칙】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①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가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의 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6. 06. 29일부터 시행합니다.